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위반 건설기술자 행정처분[업무정지]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10일

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

대상자	생년월일	주소지
김 혜 영	80.03.05.	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1길 11-8, 102동 (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)

2. 처분사항 : 업무정지 16개월('17. 11. 22. ~ '19. 3. 21.)

3. 처분사유

- '06. 1. 10. ~ '17. 6. 13까지 세이브건설(주) 등 7개업체에 경력증(건축 초급)을 대여

4. 근거법령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
-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[별표1]

5. 유의사항

-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